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7 선고 2020가합4098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중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석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균희, 김우진

변 론 종 결 2021. 11. 9.

판 결 선 고 2021. 12. 7.

주 문

1. 피고 C와 D 사이에 2016.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1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C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B는 D와 연대하여 31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에 대하여는 2016. 6.

11.부터, 1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6. 3. 및 2016.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피고 C와 D 사이에 2016.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0. D로부터 안성시 E 임야 13,938㎡ 및 F 임야 30,937㎡¹⁾ 중 22,239㎡(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290,000,000원에 매수하고, D에게 위 매매대금 중 9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6. D에게 ‘위 매매계약은 D가 안성시로부터 추모공원설치사업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묘지로 변경한 뒤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안성시가 위 사업승인 및 지목변경을 불허하여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2. D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6가합202776)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0. 31. 위 매매계약은 D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안성시의 추모공원설치사업 승인불허로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하면서 다만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D에게 매매대금 975,000,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D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D는 2016. 6. 3. H에게 인천 남동구 I외 1필지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13,000,000원에 매도하고, H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2016. 6. 10. 잔금 중 190,000,000원(= 수표 187,000,000원 + 계좌이체 2,100,000원 + 현금 9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6. 6. 10.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D는 2016. 6. 10.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H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나머지 잔금 113,000,000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10. H로부터 위 113,000,000원 중 정산금 1,700,000원을 공제한 111,300,000원(= 수표 111,000,000원 + 현금 300,000원2))을 지급받아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내지 12, 14 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H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313,000,000원을 2~3개월에 걸쳐 1,000,000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는바, 이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D의 아들인 피고 B는 D와 함께 위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꿔 은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는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D가 2016. 6. 10.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중 190,000,000원(= 수표 187,000,000원 + 계좌이체 2,100,000원 + 현금 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16. 6. 10. 위 수표 중 186,000,000원을, 현금 900,000원 중 600,000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위 계좌에서 2016. 6. 13.부터 2016. 9. 19.까지 164회에 걸쳐 현금으로 185,700,000원, 수표로 4,300,000원이 각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가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H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꿔 은닉하였다거나, 피고 B가 그러한 은닉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채무초과상태에서 H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2016. 6. 3. 및 같은 달 10. 피고 B에게, 113,000,000원을 2016. 6. 10. 피고 C에게 각 증여하였는바, 위 각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수익자인 피고 B는 200,000,000원을, 피고 C는 113,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D가 2016. 6. 10. H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190,000,000원 중 186,600,000원(= 수표 186,000,000원 + 현금 600,000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위 계좌에서 2016. 6. 13.부터 2016. 9. 19.까지 164회에 걸쳐 현금으로 185,700,000원, 수표로 4,300,000원이 각 인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인천지방법검찰청 2019형제40827호)의 불기소결정서에 D가 '아들의 사업자금(2억 원) 마련을 위해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는데'라고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가 위 매매대금 수령 및 현금 인출에 관여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피고 B에게 실제로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가 피고 B에게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2015. 12. 16. D에게 안성시의 추모공원설치사업 승인불허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은 그 무렵 이행불능으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D에 대하여 기지급한 매매대금 97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초과(무자력)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갑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2016. 10. 10. 현재 적극재산으로 L조합에 대한 70,111원의 예금채권, H에 대한 111,300,000원의 매매대금 잔금채권 및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97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안성시 E 토지의 2016. 10. 10.경 개별공시지가는 55,973,410원(= 2016년 개별공시지가 6,730원 × 8,317㎡), G 토지의 2016. 10. 10.경 개별공시지가는 233,893,170원(= 2016년 개별공시지가 6,390원 × 36,603㎡)인 사실, 위 각

토지는 2019. 12. 2.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M)에서 488,800,000원에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시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488,800,000원에 매각된 점을 고려하면, 위 각 토지의 시가 합계액은 2016. 10. 10.경 적어도 488,800,000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D는 2016. 10. 10. 현재 채무초과상태($\Delta 374,829,889\text{원} = 70,111\text{원} + 111,300,000\text{원} + 488,800,000\text{원} - \text{소극재산 } 975,000,000\text{원}$)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D가 2016. 10. 10. 피고 C의 계좌에 H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111,300,000원(= 수표 111,000,000원 + 현금 3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는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 C가 자신에게 매매잔금을 달라고 부탁해서 놓고 병약해진 처(피고 C)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H로부터 받은 매매잔금을 피고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피고 C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 111,3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D의 위 증여행위는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D의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D의 2016. 10. 10.자 피고 C에 대한 111,300,000원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1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종선, 판사 이인호, 판사 김형준

1) 위 2필지는 2012. 6. 27. E 임야 44,920㎡로 합병되었다가 2012. 11. 7. E 임야 8,317㎡와 G 임야 36,603㎡로 분할되었다.

2) 위 금액에 피고 C가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 40,000원을 합한 34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